

석좌교수임용 규정

- 제 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석좌교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조(정의)** 석좌교수라 함은 교계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한 기부금이나 본교의 교비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된 교수를 말한다.
- 제 3조(자격)** 석좌교수는 국내·외적으로 학문 및 예술분야 연구업적이 탁월하거나 학교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명망있는 인사 중에서 선임한다.
- 제 4조(임용 절차)** ① 석좌교수의 임용 절차는 총장 또는 학과(부)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용하도록 한다.
② 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
- 제 5조(구비 서류)** 석좌교수 임용 추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.
1. 석좌교수 추천을 받은 자의 이력서
 2. 석좌교수 추천 의견서
 3.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
- 제 6조(처우)** ① 석좌교수에 대한 처우는 본교 특별교원(명예교수·겸임교수)에 대한 기준에 준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교 공헌도,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 대우할 수 있다.
② 석좌교수의 처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한다.
- 제 7조(임무)** ① 석좌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강의 또는 연구
 2. 특별강연 및 세미나
 3. 기타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
- ② 제1항을 포함한 기타 사항은 임용계약서로 정한다.
- 제 8조(기타)**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4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